국민연금법개정법률 설명자료
(급여부분)

2007. 7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 1
2. 출산 Credit 제도 도입 ····· 2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3
4. 미지급급여 수급요건 중 생계유지인정기준 폐지 ····· 4
5.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조정기준 완화 ····· 5
6. 급여압류 제한 설정 ····· 7
7. 연기연금제 도입 ····· 8
8. 감액노령연금액 지급율 2.5% 상향 조정 ····· 9
9.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상향 조정 ····· 10
10.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 지급 ····· 11
11.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함께 지급 ····· 11
1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재근로시 인센티브 도입 ····· 12
13. 가입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 수급조건 인정 ····· 13
14. 미완치 상병의 장애결정 유보기간 단축 ····· 13
15.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폐지 ····· 14
16.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제외 ····· 15
17. 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인정 수급요건 완화 ····· 16
18.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간 형평성 확보 ····· 17
19. 구직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 18
20.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산 시점 개선 ····· 19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제18조)

1. 개정(안) 요지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 추가 인정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A값*의 1/2로 인정

  *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06년도 156.6만원)

- 추가 소요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
- '08. 1. 1 이후 입대하는 자부터 적용

2. 기대효과

○ 추가 인정 가입기간 6개월의 소득 수준을 A값의 1/2로 인정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은 약 월 9천원의 인상 효과가 있음

-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에게 군복무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적정급여 보장
- 군복무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젊은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심 유도

2 출산 Credit 제도 도입 (제19조)

1. 개정(안) 요지

○ '08.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 모 또는 부의 노령연금액 인상

-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월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인정소득 : 추가 가입기간은 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

※ A값 :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07년 현재 1636만원)

- 가입기간인정시점 :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지원

○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균분

○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연금기금 지원 근거 : 출산율 저하는 급속한 고령화의 요인일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 축소 등 연금제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우하여 출산에 대해 연금기금의 보상과 지원은 정당성을 가짐

2. 기대효과

○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율 제고

- 노령연금액은 2자녀 출산시 월 23천원, 3자녀 출산시 월 57천원의 인상효과가 있음

○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는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 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 축소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제52조제1항2호)

1. 개정(안) 요지

○ 생계유지를 같이 하는 계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연금수급자에게 본인의 연금액에 배우자, 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각각 월 16천원, 10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 다만, 이혼 등으로 계자녀와의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례>

→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씨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계자녀)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의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재혼에 따라 새로 생기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현실 반영

- 생계를 같이하는 계자녀에게 부양가족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4 미지급급여 수급요건 중 생계유지인정기준 폐지 (제55조제1항)

1. 개정(안) 요지

○ 연금청구가 늦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지급**

○ 단,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형제자매가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미지급급여의 상속재산적 성격의 미지급급여 제도 취지에 부합

○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

5 2개 이상의 급여발생시 조정기준 완화 (제56조)

1. 개정(안) 요지

○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하나의 급여 +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지급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 유족연금액의 20%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 60세 여성인 김씨가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때 현행 규정에 의하면 두가지 급여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받고, 유족연금액의 20%를 함께 받게 됨

→ 60세 여성인 이씨가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중 자신의 반환일시금이 발생한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두가지 급여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전액받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2. 기대효과

○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보험료 납부유인 강화

참고

<개정법안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사례별 적용>

구 분	선발급여	후발급여	개정법 적용결과
두 급여 모두 본인 기여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선택된 급여만 지급
	장애연금	노령연금	선택된 급여만 지급
		반환일시금	선택된 급여만 지급
본인과 가족 각각 기여의 경우	유족연금	노령연금	노령+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본인)	유족+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족)	노령+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족)	장애+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급여 모두 가족의 기여의 경우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유족연금의 20%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족)	유족+사망일시금 상당액 반환일시금

※ 두 사람의 기여에 의하여 각각 발생한 급여의 경우는 선택한 급여 전액과 선택하지 않은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 위함

6 급여 압류 제한 설정 신설[제58조제2항]

1. 개정(안) 요지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 ('07.7월 시행)

*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금액(월 120만원)을 고려, 연금액이 월 120만원이하인 경우로 정할 예정

- 급여지급계좌를 압류한 기관(자)가 연금지급액을 채권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사례>

→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김씨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이 압류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을 전액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2. 기대효과

○ 신용불량자 등을 압류로부터 보호하여 생계비적 성격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

3. 타법령의 입법례

○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제36조(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7 연기연금제 도입 (제62조)

1. 개정(안) 요지

○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상향 조정

-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연기되는 매1월마다 0.5% 가산 지급(1년에 6%씩 연금액 증액)

<사례>

→ 소득활동을 하는 60세인 김씨가 월 40만원의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수급을 1년 연기하게 되면 1년후 다시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424천원을 지급받게 되어 24천원의 인상*효과가 있음

* 물가상승율 만큼 추가 인상되나 편의상 반영하지 않은 금액임

2. 기대효과

○ 고령자의 근로활동 유인

8 감액노령연금액 지급율 2.5% 상향 조정 (제63조제2항)

1. 개정(안) 요지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 폐지

현 행		개정안
47.5% (10년) ~ 92.5% (19년)	➡	50% (10년) ~ 95% (19년)

※ 10년 가입자의 경우 20년 가입자 연금액의 47.5%(50%-추가감액률 2.5%)를 지급받으나, 개선시 50% 지급

<사례>

→ 가입자의 평균소득('06년기준 월 156.6만원)으로 10년을 가입한 자가 지급받는 감액노령연금액은 현행 규정 적용시 223천원, 개정안 적용시 234천원으로 월 11천원의 인상효과가 있음

2. 기대효과

○ 특례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형평성 도모

○ 가입기간이 짧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급여액을 상향 조정

9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상향조정 [제63조제4항]

1. 개정(안) 요지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시 수급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75%에서 70%로 하향조정하고 지급연령에 따른 감액 폭을 5%p에서 6%p씩으로 확대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현 행	개 선 안
완전노령연금 개시 5년전	기본연금액의 75%	기본연금액의 70%
4년전	80%	76%
3년전	85%	82%
2년전	90%	88%
1년전	95%	94%
완전노령연금 개시연령	100%	100%

○ 조기노령연금 청구당시 월 개념이 포함된 감액률 적용(매월 0.5%p씩 가산)

2. 기대효과

○ 조기노령연금의 재직자노령연금 전환, 재가입기간을 연금액 산정시 반영 등의 혜택에 반하여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을 상향 조정(패널티 강화)하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양산 가능성 축소

10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 지급 (제64조제65조)

1. 개정(안) 요지

○ 분할연금 지급정지 사유인 '재혼' 사유 삭제

○ 분할연금수급권 소멸 또는 정지시 분할연금액을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조항 삭제

<사례>

→ 이혼한 A씨가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할 경우 현행 제도에 의하면 분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분할연금은 이혼 당사자(특히 이혼여성)의 재산분할권적 성격의 급여인 점을 고려,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

11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함께 지급 (제65 제2,4항)

1. 개정(안) 요지

○ 분할연금수급권과 본인의 노령연금수급권간에는 급여의 중복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지급함

2. 기대효과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간의 병급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혼시 연금 분할의 공평성 확보

1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재근로시 인센티브 도입 (제66조)

1. 개정(안) 요지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이후 소득활동 종사시 재직자노령연금 적용

<현 행>	➡	<개선방안>
65세 이전 소득활동 종사시 조기노령연금 급여 정지		60세 이전에는 현재처럼 정지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 지급

<사례>

→ 56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여 받고 있던 A씨가 60세이후 소득활동에 종사시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재직자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됨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급여정지된 후 다시 소득이 없어 연금을 재개할 때, 최초 청구 시 지급율(例 : 55세 75%)을 계속 적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중간에 근로한 기간(재가입기간)만큼 지급률 인상(재가입기간 1년당 6%p가산)

2. 기대효과

○ 고령근로 유인 강화

13 가입중 초진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 수급조건 인정(제67조제1항)

1. 개정(안) 요지

○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중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

<사례>

→ 김씨가 국민연금 가입 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간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 의면 그 간암의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가입전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연금 지급 가능

2. 기대효과

○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 가입중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배제로 장애·유족연금 심사의 일관성 유지

14 미완치상병의 장애결정유보기간 단축 (제67조제2항)

1. 개정(안) 요지

○ 미완치상병의 장애결정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사례>

→ 국민연금 가입중 '06. 5월 간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08. 5월부터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07. 12월부터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15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남녀차별 폐지 (제73조, 제76조)

1. 개정(안) 요지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처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사례>

→ 국민연금 가입자 김씨가 사망한 경우 40세인 김씨의 남편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연령요건 폐지)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기간 조정

현 행		개정안
최초 **5년**간 지급후 정지, **50세** 이후에 계속 지급 - 여성인 배우자만 적용	➡	최초 **3년**간 지급후 정지, **55세** 이후에 계속 지급 - 남녀 모두 공통 적용

※ 단, 최초 수급 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함

2. 기대효과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성별 차별적인 수급권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소득활동 종사여부 등 합리적인 수급조건을 남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 성차별적 요소 해소

16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제외 (제77조)

1. 개정(안) 요지

○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자가 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u>타공적연금 가입자</u>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사례>

→ 국민연금 가입자인 김씨가 공무원이 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가 되어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되었으나, 타공적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가입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되는 노후 소득보장 문제 해소

-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정법안에 따르면 60세 도달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17 사망일시금의 생계유지 인정 수급요건 완화 (제80조)

1. 개정(안) 요지

○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에게는 생계유지 관계와 상관없이 **신분관계 확인만으로 지급**

- 단,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지급

2. 기대효과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어 지급하게 되는 사망일시금은 장제비적 성격을 고려, 사망일시금 청구권자의 청구절차 간소화로 편의 증진

18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간 형평성 확보 (제81조)

1. 개정(안) 요지

○ 18세 미만 자녀(또는 손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 도달까지 받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사례>

→ 월 20만원의 유족연금을 17세부터 지급받는 자녀가 18세에 도달시 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총 240만원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그 자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이 500만원인 경우 그 차액인 2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가입자 사망일 현재 18세미만인 자와 18세이상인 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

19 구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가능 (구법제93조의2 삭제)

1. 개정(안) 요지

○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사례>

→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김씨가 고용보험에서 구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전액 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20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산 시점 개선 [제116조 신설]

1. 개정(안) 요지

○ 60세 이전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가입 등)가 발생했으나, 향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지급받지 아니한 자가 60세 도달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규정에 의하면, 60세 이전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하고도 5년간 지급받지 아니하면, 60세 도달시 그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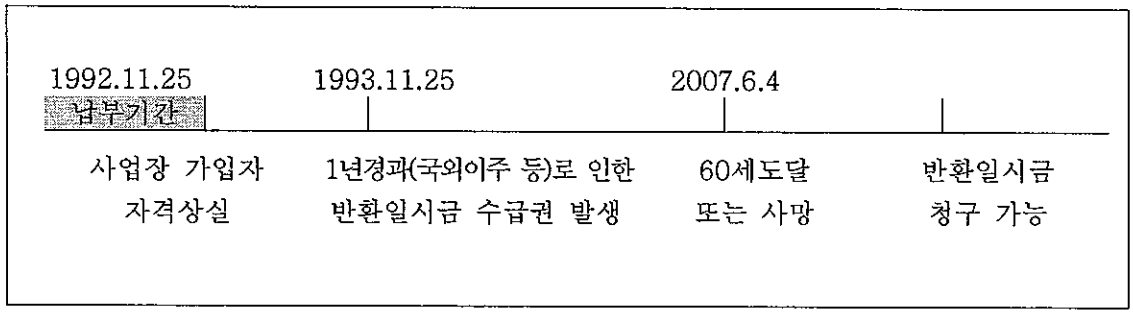

· '93.11.25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5년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기대효과

○ 타공적연금가입, 국외이주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재가입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여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